

소년범죄의 실태와 소년사건처리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alities of Juvenile Delinquencies and Juvenile Case Processing

김창균* · 임계령**

Kim, Chang-Kuhn · Rim, Kye-Ryung

목 차

- I. 서론
- II. 소년범죄의 실태
- III.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 IV. 결론

국문초록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사법처리를 비행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소년보호절차와 범죄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행하는 소년형사절차로 나누고 있다. 그 동안 소년비행과 소년사범의 영역에서 큰 성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소년사건처리의 실무에 있어서 소년법의 적용에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소년사건처리의 이론과 실무 또한 원인과 대책의 절연 그리고 형사사법기관의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등이 소년법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 탓도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소년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경찰, 검찰, 형사법원, 소년법원 등의 사법기관의 역할이 무엇이며 어떠한 절차에 따라 소년사건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논문접수일 : 2010. 3. 30.

심사완료일 : 2010. 4. 30.

게재확정일 : 2010. 5. 4.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제어 : 소년범죄, 경찰, 검찰, 형사법원, 소년법원

1. 서론

소년은 내일의 사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미래의 주인공이며 희망이다. 따라서 소년의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대사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이 삶의 주체로서 사회에 필요한 인성과 자질을 개발하고, 책임 있는 선량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소년 자신 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 등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소년범죄의 특징을 보면, 청소년에 의한 폭력, 금품갈취, 성폭행 등과 같은 일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연령화, 집단화, 흉포화와 같은 질적인 변화와 재범율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소년범죄의 원인은 청소년들이 개인의 욕구나 순간적 또는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정서적 불안이나 인내심 결핍 그리고 학교에서의 전인교육이 아닌 입시위주의 교육, 매스미디어 발달의 역기능, 부조리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아울러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부족 및 유대관계 단절 그리고 물질만능, 음란폭력물이 난무하는 유해환경에 둘러싸인 사회, 국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도덕과 윤리는 뒷전이 되는 등의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1958. 7. 24. 법률 제489호로 제정된 후 1963년과 1977년에 개정되었다가 1988년 전문 개정되었다. 그 후 1995년과 2007년에 개정되어 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소년법은 2008년 6월 22일 새로이 시행되었다.¹⁾ 이는 소년범죄의 절대적 수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흉포화 (<표 2> 참조), 재범율의 증가(<표 4> 참조), 촉범소년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범소년은 경찰의 송치가 전무하다²⁾는 문제점 발생에 의하여 소년사건처리 및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소년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소년범죄라 함은 개정소년법의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해 14세(형사책임연령)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와 10세

1) 개정된 소년법의 주요 내용은 ①소년법 대상 소년들의 연령 인하(제2조 및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 ②소년보호사건에 국선보조인제도 도입(제17조의2 신설), ③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 및 보호처분의 기간 조정(제32조, 제32조의2 신설, 제33조), ④검사의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도입(제49조의2 신설), ⑤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제49조의3 신설), ⑥비행 예방정책 기본 규정 신설(제67조의2 신설) 등이다.

2) 법무부, 소년보호통계 제16호, 2007. 30면.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촉법행위³⁾를 말하며, 동조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우범 소년의 대상은 10세 이상 19세 미만⁴⁾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소년인 경우에 성인에 비하여 형벌 자체를 완화하고 형사절차에서도 특별한 취급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소년에 대하여 형벌과는 그 법적 성격이 상이한 보호처분이라는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이를 일반 형사법원이 아닌 소년법원으로 하여금 소년심판절차를 거쳐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대상을 범죄소년으로만 제한하고 있지 않다. 즉 범죄소년과 달리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촉법소년과 우범소년까지도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소년법의 개정은 심각한 수준의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상습적 소년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고 있다. 소년재범현상에 대한 유용한 대처방안으로 교화와 선도의 중심에서 소년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된다.

이 같은 잠재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새로 개정된 소년법은 대상연령을 축소만 하였을 뿐, 이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소년사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주위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⁵⁾

특히 소년은 인격적으로 미완성된 존재에서 출발하여야 한다.⁶⁾ 이러한 인격적 미성숙은 범죄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쉽게 교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처우 방법으로 사용된다면 교정, 교화가 용이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유능한 성인으로 성장 시킬 수 있다. 이 점에서 현행의 소년범죄처리에 관한 절차도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으로 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소년범죄의 실태와 경찰, 검찰, 법원 등 각 형사사법기관이 소년범죄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3)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연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
- 4)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5) 한숙희,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른 가정법원의 역할과 과제",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통권 제 7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64면.
- 6) 장중식, "소년범죄 처리와 소년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41호, 한국교정학회, 2008, 143면.

II. 소년범죄의 실태

소년범죄의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범죄에 관한 공식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소년범죄의 실태와 양적, 질적인 변화를 살펴보겠다. 본고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료는 매년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통계인 「범죄분석」의 자료를 정리한 「범죄백서」이며, 필요에 따라 「경찰백서」, 「아동·청소년백서」 등의 자료를 혼용하였다. 통계에서 말하는 소년범죄란 엄밀히 말하면 청소년 비행이 아닌 보다 협의의 개념인 범죄를 의미한다. 즉 형법을 위반한 범죄소년과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소년범죄자의 수, 전체범죄자 중 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과 현황, 그리고 소년범죄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제시되고 있는 저연령화, 흉포화, 높은 재범률 현황을 살펴보고, 강력범죄와 폭력범죄의 현황, 전과현황 등에 관해 살펴본다.

1. 소년범죄와 전체범죄

소년범죄자의 수가 감소하였다고 소년범죄문제가 완화되었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소년범죄자의 수는 인구규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소년인구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⁷⁾

〈표 1〉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소년범죄 발생현황이다. 이를 살펴보면 전체 소년범은 10만명을 전후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1년부터 점차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에는 전년대비 0.3% 증가한 143,643명, 2001년에는 8.8% 감소한 130,98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에는 11.9%, 16.8%, 24.3%, 7.3%로 감소하다가 2006년에는 전년도 대비 2.6% 증가하였다. 이후 2007년에는 27.3%, 2008년에는 53.2%로 증가하였다.

전체범죄인원 중 소년범의 점유비율은 2000년 6.8%에서 2006년 3.7%로 계속 감소하였으나 2007년에는 4.5%, 2008년에는 5.5%를 차지하여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소년범죄자 중 형법범과 특별범의 구성비율을 보면, 그 증감변동은 있었지만 특별범의 비율이 2001년 이후부터 계속 감소하다 2005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8년도에 소년 특별범을 범죄유형별로 구분한 결과, 도로교통법위반이 전체의 39.9%인 22,037명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저작권위반이 36.7%로 20,272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9.3%로 5,138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 3.2%

7)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백서」, 2009, 59면.

로 1,770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1.5%로 814명,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이 0.9%로 491명, 병역법위반이 0.4%로 213명,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0.3%로 173명, 기타 7.8%로 4,318명으로 나타났다.⁸⁾

〈표 1〉에서 소년범죄는 1998년 이후로 감소하고 소년범죄율도 2001년 이후로 줄어들고 있다. 2005년까지의 소년범죄율은 감소했지만 2006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소년범죄의 감소추세는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지만 소년범죄문제의 안정화가 다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소년범죄의 예방과 보호조치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⁹⁾

〈표 1〉 전체 소년범 인원 및 전체 범죄인원중 점유비율(1999년~2008년)

(단위 : 명)

구분 연도	전체 소년범	전년대비 증감률 (%)	전체범죄 인원중 점유비율 (%)	소년 형법범	전체범죄 인원중 소년형법범 점유비율(%)	소년 특별범	전체범죄 인원중 소년특별범 점유비율(%)
1999	143,155	-3.6	6.2	93,261	10.4	49,894	4.7
2000	143,637	0.3	6.8	94,465	9.9	49,178	4.8
2001	130,983	-8.8	5.6	82,746	11.0	48,237	4.4
2002	115,423	-11.9	5.0	75,982	8.6	39,441	3.0
2003	96,085	-16.8	4.2	67,135	6.5	28,950	2.3
2004	72,770	-24.3	3.2	51,298	6.1	21,472	1.6
2005	67,478	-7.3	3.4	50,652	6.4	16,826	1.9
2006	69,211	2.6	3.7	50,846	6.5	18,365	2.2
2007	88,104	27.3	4.5	60,426	7.8	27,678	2.9
2008	134,992	53.2	5.5	79,766	8.3	55,226	4.5

자료 : 1. 범죄분석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은 형법범에 포함.

2. 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소년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소년범죄의 유형

8)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9. 111~119면 재구성.

9) 이순례,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통권 제7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1052면.

〈표 2〉 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93,261 (100)	94,465 (100)	82,746 (100)	75,982 (100)	67,135 (110)	51,298 (100)	50,652 (100)	50,846 (100)	60,426 (100)	79,766 (100)
강력범	소계	4,332 (4.6)	3,762 (4.0)	2,994 (3.6)	2,323 (3.1)	2,359 (3.5)	1,708 (3.3)	1,549 (3.0)	1,857 (3.7)	1,928 (3.2)	3,016 (3.8)
	흉악범 (살인·강도)	2,861 (3.1)	2,334 (2.4)	1,717 (2.1)	1,328 (1.7)	1,388 (2.0)	893 (1.7)	720 (1.4)	786 (1.5)	948 (1.6)	1,238 (1.6)
	성폭력	1,417 (1.5)	1,366 (1.4)	1,193 (1.4)	945 (1.2)	915 (1.3)	765 (1.5)	752 (1.4)	979 (1.9)	834 (1.4)	1,589 (2.0)
	방화	54 (0.0)	62 (0.0)	84 (0.1)	50 (0.0)	56 (0.0)	50 (0.0)	77 (0.2)	92 (0.2)	146 (0.2)	189 (0.2)
폭력범	소계	52,950 (56.7)	54,662 (57.8)	49,186 (59.4)	37,872 (49.8)	31,401 (46.7)	21,788 (42.3)	21,009 (41.5)	18,104 (35.6)	23,275 (38.5)	34,067 (42.7)
	폭처범 위반	50,126 (53.7)	51,593 (54.6)	46,365 (56.0)	35,630 (46.8)	29,307 (43.6)	20,188 (39.2)	19,348 (38.2)	13,933 (27.4)	17,344 (28.7)	24,808 (31.1)
	폭행·상해	2,333 (2.5)	2,509 (2.7)	2,277 (2.8)	1,762 (2.3)	1,713 (2.6)	1,322 (2.6)	1,356 (2.7)	3,713 (7.3)	5,255 (8.7)	8,096 (10.1)
	공갈	443 (0.4)	454 (0.5)	388 (0.5)	348 (0.5)	272 (0.4)	219 (0.4)	238 (0.5)	405 (0.8)	562 (0.9)	1,046 (1.3)
	기타	48 (0.0)	106 (0.1)	156 (0.2)	132 (0.2)	109 (0.2)	59 (0.1)	67 (0.1)	53 (0.1)	114 (0.2)	117 (0.1)
재산범	소계	35,281 (37.8)	35,196 (37.3)	29,723 (35.9)	34,151 (44.9)	32,009 (47.6)	26,429 (51.5)	26,848 (53.0)	29,506 (58.0)	33,659 (55.7)	39,688 (49.8)
	절도	30,388 (32.5)	30,125 (31.8)	23,065 (27.8)	24,953 (32.8)	22,907 (34.1)	19,845 (38.7)	22,068 (43.6)	24,842 (48.8)	28,839 (47.7)	33,073 (41.5)
	장물	612 (0.6)	520 (0.6)	319 (0.4)	298 (0.4)	234 (0.3)	171 (0.3)	173 (0.3)	222 (0.4)	271 (0.4)	571 (0.7)
	사기	3,385 (3.6)	3,474 (3.7)	5,308 (6.4)	8,032 (10.5)	8,077 (12.0)	5,713 (11.1)	3,902 (7.7)	3,445 (6.7)	3,382 (5.5)	4,189 (5.3)
	기타	896 (1.0)	804 (0.9)	1,031 (1.2)	868 (1.1)	113 (0.7)	106 (0.2)	83 (0.2)	297 (0.6)	446 (0.7)	727 (0.9)

- 주 : 1. 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구 100,000명당 범죄자 수
 2. 강력 폭력범 기타에는 협박,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단체 등의 구성·활동)해당
 3. 흉악범에는 살인과 강도 해당
 4. 성폭력에는 강간 포함
 5.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9, 120~125면(재구성).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은 폭력범이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유형별 현상이 달라지고 있다. 1999년에는 폭력범이 52,950명인 56.7%, 재산범이 35,281명인 37.8%, 강력범이 4,332명인 4.6%로 나타나 소년범죄의 유형 중에서 폭력범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재산범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폭력범, 강력범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재산범이 폭력범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재산범죄 중에서도 절도죄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도 소년 형법범의 범죄유형 내지 죄명별 인원과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79,766명 중 재산범이 39,688명으로 49.8%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폭력범이 34,067명으로 42.7%, 강력범이 3,016명으로 3.8%로 나타났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를 보통 강력범죄¹⁰⁾라고 한다. 이 범죄에 관한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 4,332명인 4.6%, 2001년 3.6%, 2005년 3.0%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6년 3.7%로 증가하였고, 2007년 3.2%로 다시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08년 3.8%로 증가하였다. 죄명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 흉악범이 1,238명(1.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성폭력이 1,589명(2.0%), 방화가 189명(0.2%)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¹¹⁾의 경우 2000년에 54,662명인 57.8%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2002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여 2006년 18,104명인 35.6%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 23,275명인 38.5%로 전년도 대비 22.4%로 증가현상을 나타냈다. 죄명별로 가장 최근인 2008년도의 수치만을 보면,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이 31.1%(24,808명)로 가장 높았고, 폭행·상해 10.1%(8,096명), 공갈 1.3%(1,046명) 순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을 분석하여 본 결과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재산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질러지는 부정한 전자상거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광고하고 구매자가 대금을 온라인으로 입금하면 이를 찾아 쓰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소년범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10) 강력범은 대체로 폭력을 사용하여 사람이 생명을 빼앗거나 신체적·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말한다.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살인·강도·강간·방화 등의 범죄를 강력범이라 한다.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8. 116면.

11) 폭력범죄는 형법범 중 상해·폭행·공갈과 특별법범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을 말한다.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8. 118면.

3. 소년범죄의 연령층별 현황

최근 10년간 소년범죄연령층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14세 미만은 1999년의 970명으로 전체 소년범 중 1.0%에 달하였으나 2008년에는 346명으로 산술적 인원수 뿐 아니라, 전체 소년범 중 차지하는 비율도 0.4%로 감소하였다. 14세에서 15세는 1999년 22,612명으로 전체 소년범 중 24.2%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8년 30,031명으로 37.7%를 차지하였다. 16세에서 17세 사이의 소년범은 1998년 33,094명인 35.5%에서 2008년 28,896명인 36.2%로 10년간 증감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세에서 19세 사이의 소년범은 1999년 36,585명으로 39.2%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 20,493명으로 25.7%를 나타내어 감소추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인 2008년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소년범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16세에서 17세 사이가 가장 높았다. 소년범의 저연령화를 형법법에 한정할 경우 그 비율이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실하다고 하겠다.¹²⁾

<표 3> 소년범죄의 연령층별 인원

(단위:명,%)

연령 \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4세미만	970 (1.0)	978 (1.0)	957 (1.1)	1,125 (1.5)	891 (1.3)	523 (1.0)	198 (0.3)	190 (0.3)	195 (0.3)	346 (0.4)
14-15세	22,612 (24.2)	25,198 (26.7)	20,488 (24.4)	19,262 (25.3)	18,265 (27.2)	13,931 (27.2)	24,420 (48.2)	18,941 (37.2)	23,890 (39.5)	30,031 (37.7)
16-17세	36,600 (36.7)	33,094 (35.5)	27,291 (32.6)	25,137 (33.1)	22,409 (33.4)	16,487 (32.1)	17,098 (33.8)	17,612 (34.6)	21,233 (35.1)	28,896 (36.2)
18-19세	36,585 (39.2)	35,703 (37.8)	34,010 (40.6)	30,458 (40.1)	25,570 (38.1)	20,359 (39.7)	16,586 (32.7)	14,103 (27.7)	15,108 (25.0)	20,493 (25.7)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9, 114면.

4. 소년범죄와 재범율

소년범죄의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소년의 재범현상은 그렇지 못하다. 소년범

12) 윤동호, "소년범죄와 그 처리동향의 분석", 「경성법학」, 제16집 제1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44면.

〈표 4〉 소년범죄자 전과현황

(단위: 명, %)

연도 \ 구분	계	초범	1범	2범	3범	4범
1999	140,351 (100)	89,718 (63.9)	23,071 (16.4)	11,672 (8.3)	6,830 (4.9)	9,060 (6.5)
2000	140,893 (100)	90,875 (64.5)	22,608 (16.0)	11,311 (8.0)	6,536 (4.5)	9,563 (7.0)
2001	128,430 (100)	80,942 (63.0)	20,942 (16.3)	10,342 (8.0)	6,218 (4.8)	9,986 (7.7)
2002	112,812 (100)	71,662 (63.5)	18,326 (16.2)	9,036 (8.2)	5,046 (4.5)	8,742 (7.7)
2003	94,038 (100)	61,025 (64.9)	14,751 (15.7)	7,263 (7.7)	4,106 (4.4)	6,893 (7.3)
2004	68,803 (100)	44,267 (64.3)	11,187 (16.2)	5,227 (7.2)	3,138 (4.6)	4,984 (7.2)
2005	62,932 (100)	42,017 (66.8)	9,307 (14.8)	4,601 (7.3)	2,672 (4.2)	4,335 (6.9)
2006	64,225 (100)	44,263 (68.9)	9,193 (14.3)	4,124 (6.4)	2,428 (3.8)	4,244 (6.6)
2007	81,010 (100)	55,543 (68.5)	11,540 (14.2)	5,332 (6.6)	3,090 (3.8)	5,585 (6.9)
2008	114,699 (100)	79,285 (69.1)	15,476 (13.5)	7,553 (6.6)	4,299 (3.7)	8,086 (7.1)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1·2004·2009년 자료 재구성.

죄를 초범과 재범으로 구분하였을 때 〈표 4〉는 지난 10년간 소년범죄의 전과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4〉에서는 소년범죄를 초범과 재범으로 구분하였을 때에 재범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1999년의 경우에도 초범의 비율이 63.9%이고, 재범의 비율은 36.1%이었다. 2008년의 경우에는 초범이 69.1%, 재범은 30.9%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재범의 비율은 35% 내외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소년범죄자 중 재범의 전과회수를 살펴보면, 소년범죄의 상습화현상을 더욱 확연히 알 수 있다. 1999년 1범의 비율은 16.4%이었고, 2범은 8.3%, 3범은 4.9%, 4범 이상은 6.5%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 1범의 비율은 13.5%, 2범은 6.6%, 3범은 3.7%, 4범 이상은 7.1%로 4범 이상 비율이 2004년부터 다소간의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2007년부터 다시 증가 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소년범죄를 저지른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과거에 한번 이상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사법기관에 의해 처리되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만일 소년사법기관

이 이들에 대해 적절한 선도와 재활을 했더라면 재범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높은 재범비율은 소년사법기관이 소년범죄자를 처리하고, 이들의 선도와 재활을 담당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사회일반에서도 소년범죄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후원하는데 소홀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소년범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재범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년범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소년들의 재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소년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현행 소년법은 보호처분¹³⁾ 이외에 형사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분류하고 해당소년별로 서로 다른 사건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소년범죄자의 사건처리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임무는 사후적인 단속과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찰¹⁴⁾과 검찰¹⁵⁾은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¹⁶⁾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년범죄 예방활동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소년범사건의 처리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1. 경찰의 소년사건 처리절차

소년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는 일반적으로 경찰에 의해 개시된다. 따라서 경찰의 소년

13)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년법을 비롯한 소년원법, 미성년자보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한 바 있으며, 비행 소년의 법적처리 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도 죄질이 극히 나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와 교육 및 선도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적 처우와 보호처분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14) 경찰은 청소년 고충상담실, 범죄예방교실, 사람의 교실, 가출청소년 찾기,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소년단을 통하여 소년을 선도보호하고 있다. 경찰청, 「경찰백서」, 2007, 168~173면.

15) 검찰은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 정신교육,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학교담당 검사제, 우범소년 결연사업 등을 통하여 소년범죄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연감」, 2007, 413~417면.

16) 정부는 2005년 3월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조직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성폭력 근절을 위한 "5대 폭력 추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백서」, 2007, 192면.

사건 처리과정을 보면, ① 범죄소년을 검거하여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소년법 제48조, 제49조). ② 경찰서장은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이 있을 경우에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는데(소년법 제4조 2항), 검사를 거치지 않고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의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한다.¹⁷⁾ ③ 불량행위소년을 단속하여 소년풍기사범으로 경찰 자체적으로 처리한다.¹⁸⁾ ④ 소년에 대한 복지행정과 관련하여 요보호아동을 발견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2조에 정해진 보호조치를 받도록 한다.¹⁹⁾ 즉 경찰은 비행소년을 일차적으로 인지하여 검찰이나 법원에 통고하는 주된 사법기관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학교·종교단체 및 기타 사회복지기관들과의 협력 통해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고 비행청소년을 선도하는 일을 한다. 이와 같이 경찰은 사법관리로서의 범죄통제 기능뿐만 아니라 비행예방과 개선·교화라는 교육적, 복지적 차원이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매년 기간을 설정하여 지도교사 등과 합동단속을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소년풍기문란사범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에는 총 59,993명의 풍기문란사범을 적발하여 행위정도가 중한 665명은 즉시에 회부하고, 나머지는 가정이나 학교에 통보하여 훈방조치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여 5,577명의 소년에게 선도교육을 실시하였다.²⁰⁾ 또한 2006년에는 촉법소년은 3,175명, 우범소년은 2명을 소년법원에 송치하였다.²¹⁾ 여기에서 볼 때, 우범소년이 소년법원에 통고되거나 송치되는 예가 거의 없는 소년사범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범소년을 범죄소년 또는 촉법소년과 동일한 소년사범절차에 의해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는 소년법이 우범소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보호주의 이념에 따라 비행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국가의 적절한 개입으로 더 이상의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교정함과 동시에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라고는 하지만 흡연·음주·싸움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 등은 불량행위소년이고 경찰은 불량행위소년에 대하여 현장에서 주의, 조언, 제지 또는 필요에 따라 보호자에게 연락, 조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

17)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지 시설, 보호관찰소의 장도 관할 소년부에 통지할 수 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18) 불량행위소년이란 비행소년은 아니지만 음주·흡연·싸움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소년을 말한다(소년경찰업무처리규칙 제2조 6호). 경찰관은 불량소년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주의, 조언, 제지 또는 필요에 따라 보호자에게 연락, 조언하여야 한다(소년경찰업무처리규칙 제21조).

19) 요보호소년이란 비행소년은 아니지만 학대·혹사·방임된 소년 보호자로부터 유기·이탈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소년경찰업무처리규칙 제2조 7호).

20) 경찰청, 「경찰백서」, 2007, 187면.

21) 법무부, 「소년보호통계」, 제16호, 2007, 30면.

년부에 송치하여야 할 우범소년과 송치하지 않아도 되는 불량행위소년의 구별이 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²²⁾ 여기에서 흡연, 음주, 남녀혼숙, 음란서적, 비디오, 불량 만화 등은 모두 미성년자보호법²³⁾에 따라 소년에게 금지된 행위지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가 아닌 우범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싸움(형법 제260조 제1항), 흉기소지(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환각물질소지(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제1항)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이 소년풍기사범을 처리함에 있어서 성격에 따라 소년법 또는 형사소송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더욱이 소년법과 형사소송법이 강행규정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소년사건을 범칙금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청구대상인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을 위한 범죄소년을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소년법원이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4조). 경찰은 실무상으로 소년경찰직무규칙(2007.12.31. 개정, 예규 제376호) 제21조에 근거한 소년에게 대하여 모호한 훈방²⁴⁾조치 하거나 즉결심판²⁵⁾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소년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이 사소한 비행을 저지른 모든 소년을 공식적으로 사법처리하게 하는 것은 낙인효과를 증대시켜 오히려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경미한 범죄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과 즉결심판 청구권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소년법원이나 검사에게 송치되는 것보다 소년에게 유리하다는 점, 소년의 검사와 소년법원의 업무과다로 인한 소년사건의 줄속처리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경찰로 하여금 사법조치가 필요로 하지 않는 소년에게 대하여 공식적인 사법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비사법적인 절차, 즉 경찰 다이버전(Diversion)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것인가가 소년비행통제 정책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²⁶⁾

22) 윤동호, 앞의 논문, 46면.

23)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제1항.

24) 경찰청에서는 '소년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으로 경찰다이버전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오영근,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통권 제7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6면.

25)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이 즉심대상(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3호)이기 때문에 즉심대상의 소년은 보호처분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따라서 경찰이 즉심대상 소년인 보호처분대상자를 소년법원에 송치하지 않고 즉심에 회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소년법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소년법 제4조 2항).

26) 개정 소년법이 훈방이나 선조조건부 훈방의 근거규정의 신설 및 법원선의주로의 전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결국 부처간의 권한다툼 또는 이견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오영근, 앞의 논문, 21면.

2.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절차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는 법원선의주의보다 제한된 검사선주의를 채택 하고 있다.²⁷⁾ 검사선주의란 소년형사사건의 성격을 먼저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다.²⁸⁾ 즉, 검사는 소년사건을 불기소함으로써 소년에 대한 사법절차를 종료시킬 수도 있고,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해 반해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소재량과 소년법상의 선의권을 배경으로 소년에 대해 선도조건부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범죄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 되거나 공소권이 없을 때 불기소처분을 한다.²⁹⁾ ② 죄가 성립되고 공소권이 있을 때는 공소제기 한다.³⁰⁾ ③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소추가 필요성이 없는 때에는 기소유예처분 한다.³¹⁾ ④ 재범가능성이 희박하고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한다. ⑤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사건인 때에는 약식명령을 청구한다.³²⁾ ⑥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이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소년을 법원에 송치한다.³³⁾

하지만 검사의 선의권 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먼저, 경찰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소년법원에 직접송치(소년법 제4조 제2항)하거나 보호자 등이 비행소년을 소년법원에 직접 통고(소년법 제4조 제3항)하는 제도가 있다. 또한 소년법원이 검사가 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소년사건을 다시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여 소년법원으로 이송(소년법 제50조)하는 제도도 있다. 이밖에도 경찰이 독자적으로 훈방·선도하거나 즉결심판 청구나, 소년법 제49조 제1항 전단의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소년법원에 송치하도록 한 것도 검사의 선의권에 대한 예외라 할 수 있다.

검사선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에 의해 소년의 성격, 경제적 능력 및 사회적 환경이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뒷받침되지 아니한 채 소년비

27) 원혜옥, “소년법과 비행소년 사법절차”, 「범죄예방의 이론과 실제 증보2판」, 한국범죄예방정책연구, 2005, 256면.

28) 검사선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형식적인 조화에만 치우칠 수 있다. 1차적인 선의권을 검사가 행사함으로써 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나 소년사법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며 또한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검사선주의는 비판받고 있다. 이수형,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상의 문제점과 대안”, 「법학논고」, 제21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4, 95면.

29)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제3항.

30) 형사소송법 제246조.

31)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32) 형사소송법 제448조.

33) 소년법 제49조 제1항.

행에 대한 처우가 결정된다면 이는 소년의 비행요인에 적합한 처분이 아닐 위험성이 많아 그 소년의 사회화에 별다른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소된 소년들 중 상당수가 형사재판부에서 소년법원으로 송치됨으로써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년들의 신체가 장기간 구금된 채 형사부와 재판부를 오가면서 스스로 좌절하거나 범죄문화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행 검사선주의 하에서도 검사들이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처분을 선호한다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법원선심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분보다는 보호처분을 선호한다고 할 수도 없다.

검사는 피의사건을 수사하여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에 따라 사법과 복지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어느 제도가 더 기능적이고 효과적이나 하는 것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소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고 또한 형사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결합판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³⁴⁾ 이에 우리나라 법원행정처는 소년법원에 소년보호부와 소년형사부를 설치하여 이른바 '결합판결'을 활용함으로써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처리결과의 불균형을 피할 수 있고, 소년에 대한 선도와 처우, 즉 형사법원이 보호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³⁵⁾ 하지만 개정소년법은 개정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이론적 논쟁 이외에 검사선주의와 법원선주의³⁶⁾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부처간에 권한다툼 또는 의견 때문에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 검사선주의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년법 제49조의2에서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를 신설하였다.³⁷⁾

소년범죄자의 처리과정 중에서 <표 5>는 검사의 소년범죄처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5>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불기소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2008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혐의 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이 없음 등의 사유로 불기소한 사례가 88,932명으로 전체 소년범죄자 134,992명의 65.9%를 차지한

34) 이순례, 앞의 논문, 1070면.

35) 윤동호, 앞의 논문, 56면.

36) 검사선주의와 법원선주의에 대한 논쟁으로, 김성돈, "우리나라 소년법의 검사선주의모델의 개선방안", 「저스티스」, 제88호, 2005, 189~210면; 이욱, "검사선주의와 법원선주의", 「소년보호연구」, 제8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5, 89~132면.

37)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는 검사가 소년피의사건에 대해서 소년부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검사는 보호관찰소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년피의자를 개선, 교화하는 데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5〉 검사의 소년범죄 처리 현황

(단위: 명, %)

구분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72,770 (100)	67,478 (100)	69,211 (100)	88,104 (100)	134,992 (100)
기소	소 계		17,045 (23.4)	11,350 (16.8)	9,315 (13.5)	10,367 (11.8)	15,150 (11.2)
	구공판		3,632 (5.0)	2,771 (4.1)	2,496 (3.6)	2,815 (3.2)	4,823 (3.6)
	구약식		13,413 (18.4)	8,579 (12.7)	6,819 (9.9)	7,552 (8.6)	10,327 (7.6)
불기소	소 계		40,617 (55.8)	40,486 (60.0)	43,495 (62.8)	54,424 (61.8)	88,932 (65.9)
	혐의없음		2,913 (4.0)	2,537 (3.8)	2,353 (3.4)	3,029 (3.4)	4,944 (3.7)
	기소유예		33,128 (45.5)	33,683 (49.9)	36,808 (53.2)	44,689 (50.7)	62,977 (46.7)
	죄가안됨		333 (0.5)	328 (0.5)	306 (0.4)	394 (0.4)	2,073 (1.5)
	공소권없음		4,243 (5.8)	3,938 (5.8)	4,028 (5.8)	6,312 (7.2)	18,938 (14.0)
소년보호송치			12,040 (16.5)	13,555 (20.1)	14,105 (20.4)	21,368 (24.3)	28,360 (21.0)
가정보호송치			26 (0.0)	10 (0.0)	20 (0.0)	22 (0.0)	30 (0.0)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9, 225면

다. 그 중에 범죄혐의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한 사례는 4,944명으로 전체소년범죄자의 3.7%이며, 기소유예한 사례가 46.7% 등이다. 이처럼 높은 불기소율은 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생애지속 범죄소년이 불기소되었을 때는 특별한 조치 없이 이들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불기소 대상자를 판별하는데 있어 보다 세심한 진단과 과학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공판율이 2004년에는 5.0%이었으나, 그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8년에는 3.6%로 낮아졌다. 이는 그동안 소년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검사의 판단에 의해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소년의 인격이나 환경보다는 범죄사실의 경중이 중심이 되고, 소년범죄자의 선도보다는 처벌이 우선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검사는 모든 소년사건을 법원소년부에 송치하고 법원소년부가 선의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견

해이다.³⁸⁾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법원소년부 송치가 증가세라는 것이다. 2004년 법원소년부 송치는 16.5%, 2005년에는 20.1%, 2007년에는 24.3%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물론 2008년에는 21.0%로 약간 감소하기는 했으나 최근 들어 검사의 선의 권이 점차 소년보호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사의 소년범죄 처리과정에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는 범죄소년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여 범죄소년을 사법절차에서 이탈시키고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년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범죄예방위원이나 보호관찰소에서 선도를 위탁하는 제도이다. 선도유예제도는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년범죄의 예방과 처우의 개선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어 그 효과가 입증되자 1981년부터 법무부훈령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선도유예는 소년사건을 법원에 접수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종료하는 대신 민간 범죄예방위원회나 보호관찰소의 선도라는 처우를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환처우이다.³⁹⁾

선도유예처분이 법원의 재판 없이 검사가 자유 제한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 실무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훈령에 근거하여 소년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⁴⁰⁾ 그러나 검사의 소년다이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는 낙인의 효과를 감소시켜 범죄소년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므로 선도유예제도를 법제화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의거한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제도⁴¹⁾로 전환하고, 그 근거규정을 소년법에 선도유예처분, 법적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⁴²⁾

소년법 개정위원회에서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위헌성여부에 관한 문제가 남아있지만, 개정소년법 제49조의3은 검사의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선도조건이 아닌 다른 형태의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⁴³⁾

〈표 6〉은 선도조건부기소유예의 실시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선도유예는 오랜 시행이

38) 김지선, 「소년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143면.

39) 선도유예 이외의 우리나라 전환처우로는 1991년부터 경찰단계에서 실시하는 '사랑의 교실'과 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소년법 수사 전문가 참여제' 등이다. 이순례, "소년전환처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년법연구」, 창간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2, 287면; 이순례, 앞의 논문, 1073~1074면.

40) 오영근,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실무", 「범죄예방의 이론과 실제」중보2판, 한국범죄예방정책연구, 2005, 273면.

41)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1995.4.15 법무부 훈령 제332).

42) 강영철, "비행소년의 증가원인과 보호대책", 「교정연구」, 제15호, 한국교정학회, 2002, 91면.

43)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도 등을 받게하고 피의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②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

력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에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 받은 소년은 4,977명으로 전체 소년범죄자의 6.84% 수준이지만, 2005년에 그 활용도가 8.17% 증가하다가 2007년에는 그 활용도가 7.70%로 다소 감소하다 2008년에는 4.4%로 급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는 사법절차를 조기에 종료하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으로 인한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소년보호사건 송치제도와 보호관찰 선도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예방위원의 자원을 활용하여 소년에게 적합한 선도와 처우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표 6〉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소년범죄	72,770	67,478	69,211	88,104	134,992
선도유예	4,977	5,511	5,626	6,610	5,886
선도유예율(%)	6.8	8.2	8.1	7.5	4.4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9, 229면.

3. 법원의 소년사건 처리절차

소년법의 제7조 제1항에서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와 처우를 하기 위해서 송치된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은 범죄소년과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이며 관할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속하며 심리와 처분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소년법 제3조).⁴⁴⁾ 소년법은 소년법원이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보호사건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검사로부터 접수받은 경우(소년법 제1항, 이하 검사송치).

44) 2001.1.29. 개정 법원조직법은 가사사건·소년보호사건 및 호적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중 일부지역에 이러한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지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법 제3조 제2항, 제3항, 제31조 제1항 및 제31조의2), 2001.1.29. 개정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도 대구·부산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던 소년부 지원을 폐지하고 가정지원을 설치하였다(법 제2조 제1항).

②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으로부터 받은 경우(소년법 제4조 2항, 이하 경찰 송치),
③ 형사법원의 심리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형사법원으로 받은 경우(소년법 제50조, 이하 형사법원송치),
④ 소년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관할이 아닌 때에 다른 소년법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소년법 제6조, 이하 이송), 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통고받은 경우(소년법 제4조 제3항, 이하 통고)이다.⁴⁵⁾ 이외에 소년부는 심리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년법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실무에서 소년법원이 보호사건으로 접수된 소년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거나 형사법원으로 이송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소년형사사건에 대하여 형사법원은 성인형사사건과 거의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원칙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다만 성인에 대한 형사절차는 소년에 대하여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⁴⁶⁾하여야 하지만 소년보호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절차에 있어서와 같은 국선변호인제도⁴⁷⁾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소년법 개정위원회에서는 소년보호절차에 있어서도 소년의 권익을 보장하고 적법절차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선변호인제도에 대응하는 보호사건에서의 국선보조인제도⁴⁸⁾를 신설하였다. 이 때 국선보조인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전문가인 의사나 교수,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소년법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⁴⁹⁾

법원단계에서의 소년사건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은 법원소년부에서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의 접수 현황이다. 현행 소년법에 의하면, 법원소년부로부터의 송치는 경찰, 검사, 형사법원 판사,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의거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45) 윤동호, 앞의 논문, 49면에서 재인용.

46)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3조.

47)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미약한 방어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3조), 피고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하여(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재심사건의 심판과 관련하여(형사소송법 제483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원혜옥, 앞의 논문, 256면.

48) 소년법 제17조의2(국선보조인) 소년이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절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 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원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① 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②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9) 강영철, 앞의 논문, 93면.

〈표 7〉 소년보호사건 접수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계	법원송치	검사송치	경찰송치	이송	통고
1999		36,757 (100)	6,988 (19.0)	23,769 (64.7)	5,988 (16.3)	11 (0.0)	1 (0.0)
2000		36,520 (100)	6,190 (17.0)	24,449 (66.9)	5,863 (16.1)	18 (0.0)	0 (0.0)
2001		30,706 (100)	3,923 (12.7)	22,013 (71.6)	4,741 (15.4)	28 (0.0)	1 (0.0)
2002		26,811 (100)	2,881 (10.7)	19,402 (72.4)	4,512 (16.8)	15 (0.1)	1 (0.0)
2003		24,222 (100)	2,045 (8.4)	17,667 (72.9)	4,474 (18.5)	14 (0.1)	22 (0.1)
2004		22,810 (100)	1,730 (7.6)	16,138 (70.7)	4,881 (21.4)	43 (0.2)	18 (0.1)
2005		24,353 (100)	1,637 (6.7)	16,607 (68.2)	6,060 (24.9)	42 (0.2)	7 (0.0)
2006		25,946 (100)	1,357 (5.2)	17,856 (68.8)	6,665 (25.7)	68 (0.3)	0 (0.0)
2007		37,910 (100)	1,538 (4.1)	26,684 (70.4)	9,636 (25.4)	54 (0.1)	0 (0.0)
2008		41,754 (100)	1,745 (4.2)	29,124 (69.8)	10,781 (25.8)	84 (0.2)	20 (0.0)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9, 262면.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의 법원소년부에 접수인원 추세를 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 2008년에 법원소년부에 접수된 소년보호 사건은 전년도에 비해 10%의 증가율 나타낸다. 이는 경찰에 의한 학교폭력, 절도, 무면허운전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⁵⁰⁾ 그리고 접수된 사건들 중에서 검사송치는 1999년도에 23,769명으로 64.7%였으며 2008년도 역시 29,124명으로 69.8%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 뿐만 아니라 검사송치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법원소년부의 가장 중요한 접수형태로 정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형사법원의 역송비율은 1999년 19.0%를 차지하여 검사송치 다음으로 높았으나 이후 현저히 감소하여 2008년에는 4.2%에 불과하다. 경찰송치의 경우는 1998년에 16.3%를 차지했으나 이후 감소하다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50)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9, 261면.

25.8%의 수준을 보였다. 이는 경찰이 법원소년부에 송치해야 할 대상이 우범소년과 측범소년이지만 대부분 10세~14세의 측범소년이며 우범소년은 거의 송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⁵¹⁾

소년법원은 소년의 성격, 환경, 비행경위, 재비행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과 소년분류심사원⁵²⁾ 분류심사관의 의견, 그밖에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처분을 결정하고, 소년법원의 판사는 검찰로부터 송부된 사건기록과 조사관의 조사의견을 종합하여 심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심리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사건을 송치 받거나 통고 받으면, 소년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의 내용과 소년 및 보호자 기타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년조사관이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소년부판사에게 보고하면, 소년부판사는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심리불개시결정⁵³⁾을 함으로써(소년법 제19조 제1항), 소년사건은 종결된다. 만약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심리불개시결정을 할 경우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하게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소년법 제19조 제2항). 그리고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개시한 경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불처분결정을 하기도 하며(소년법 제29조 제1항), 보호처분이 상당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표 8>⁵⁴⁾에 의하여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32조, 제33조). 또한 형사처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송검하여 소년법 소정의 규정(소년법 제48조, 제55조)과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2007. 12. 21. 개정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의 종류를 10종류로 하여 3종류를 추가하였다.⁵⁵⁾ 우선 보호자등 위탁(1호), 수감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보호관찰

51) 법무부, 「소년보호통계」, 제16호, 2007. 30면.

52) 분류심사원은 무체가 비교적 경미한 소년에 대하여 면접조사, 표준화검사, 신체 의학적 검사, 자기 기록, 행동관찰 결과 등을 종합하여 요보호성 여부를 판정하는 일반 분류심사와, 문제해결이 용이하지 않은 소년에 대하여 개별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자료조회, 현지조사 등을 추가하여 요보호성의 여부를 판정하는 특수분류심사가 있다. 성우제, “한국 소년보호행정의 개관”, 「범죄예방이론과 실제」중보2판, 한국범죄예방정책연구, 2005년, 153~154면.

53) 사건의 본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라든가 비행사실이라고 지적된 사실자체가 비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심리불개시결정을 할 것이다. 점승원, “법원에서의 보호사건처리절차”, 「법학연구」, 제7집, 한국법학회, 2001. 481면.

54) 장중식, 앞의 논문, 153면에서 재인용.

55)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최종식, “소년법상 보호처분제도의 개선방안”, 「소년법연구」, 제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2. 9~40면; 정의철, “현행 소년법의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

〈표 8〉 보호처분의 내용

종류	내용	기간	적용연령	비고
1호	보호자 등 위탁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월 (6월 한도로 1회 연장)	10세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12세이상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확대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14세이상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확대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1년	10세이상	
5호	보호관찰의 장기보호관찰	2년 (1년 한도로 1회 연장)	10세이상	
6호	복지시설 등 위탁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6월 (6월 한도로 1회 연장)	10세이상	의료소년원 추가
7호	병원 등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6월 (6월 한도로 1회 연장)	10세이상	
8호	1월 이내 소년원 송치	1월 이내	10세이상	신설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월 이내	10세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이상	

의 단기보호관찰(4호), 보호관찰의 장기보호관찰(5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6호), 소년보호시설에 위탁(7호)의 7가지 처분에 있어 실무상 1호 처분에는 4호 또는 5호 처분을 병합할 수 있고, 현행 소년법에 보호관찰에 병합하도록 되어 있는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을 독립된 보호처분(4·5호)으로 하여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제33조 제4항의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시간을 변경하여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32조 제1항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규정하여 초단기 소년원 송치처분(쇼크구금)을 통하여 소년에 대한 집중적 감독이나 비행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⁵⁶⁾ 또한 제32조 제1항 4호는 단기보호관찰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

안”, 『안암법학』, 제21호, 안암법학회, 2005. 86~106면.

장하였다. 이 밖에 개정소년법 제32조의⁵⁷⁾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으로 소년원 대안교육, 청소년단체 상담·교육,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외출제한명령 등을 보호관찰의 부수처분으로 규정하였다.

〈표 9〉는 지난 10년간의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법원소년부의 처분현황을 나타낸 것이다.⁵⁸⁾

〈표 9〉 소년보호사건의 처분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계	보호 처 분								불처분	심리불 개시	기타
		소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1999	36,460 (100)	32,348 (88.7)	6,688 (20.6)	10,677 (29.2)	11,234 (30.8)	920 (2.5)	14 (0.0)	1,621 (4.4)	1,194 (3.3)	1,848 (5.1)	2,118 (5.8)	146 (0.4)
2000	35,342 (100)	32,270 (91.3)	7,385 (22.8)	10,783 (30.5)	10,404 (29.4)	896 (2.5)	10 (0.0)	1,502 (4.2)	1,290 (3.7)	1,322 (3.7)	1,512 (4.3)	238 (0.6)
2001	30,496 (100)	27,314 (89.6)	6,057 (19.9)	8,818 (28.9)	8,981 (29.4)	717 (2.4)	7 (0.0)	1,420 (4.7)	1,314 (4.3)	1,255 (4.1)	1,798 (5.9)	129 (0.4)
2002	26,677 (100)	24,048 (90.1)	4,487 (16.8)	7,873 (29.5)	8,334 (31.2)	879 (3.3)	5 (0.0)	1,322 (5.0)	1,148 (4.3)	1,268 (4.8)	1,120 (4.2)	241 (0.9)
2003	26,484 (100)	22,569 (85.2)	4,806 (18.1)	7,388 (27.8)	7,652 (28.9)	534 (2.0)	-	1,107 (4.4)	1,082 (3.8)	1,224 (4.6)	2,448 (9.2)	243 (0.9)
2004	22,678 (100)	19,958 (88.0)	3,353 (14.8)	6,642 (29.2)	7,329 (32.3)	547 (2.4)	-	1,027 (4.5)	1,060 (4.7)	1,106 (4.9)	1,431 (6.3)	183 (0.8)
2005	24,303 (100)	21,135 (87.0)	4,166 (17.1)	6,906 (28.4)	7,479 (30.7)	577 (2.4)	5 (0.0)	1,053 (4.3)	949 (3.9)	1,228 (5.1)	1,758 (7.2)	182 (0.7)
2006	25,262 (100)	20,241 (80.1)	4,596 (18.2)	7,013 (27.8)	6,426 (25.4)	462 (1.8)	10 (0.0)	883 (3.4)	851 (3.3)	1,512 (6.0)	3,344 (13.2)	165 (0.7)
2007	35,514 (100)	26,874 (75.6)	6,536 (18.4)	10,425 (29.3)	7,648 (21.5)	478 (1.3)	27 (0.0)	957 (2.7)	803 (2.3)	2,056 (5.9)	5,957 (16.7)	627 (1.8)

56) 최종식, “소년법개정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358면.

57) 소년법 제32조의2(보호관찰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제3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② 제3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58)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9, 265면.

구분 연도	계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불 개시	기타
		소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기타			
2008	39,532 (100)	30,222 (76.4)	6,214 (15.7)	130 (0.3)	181 (0.5)	-	10 (0.0)	410 (1.0)	-	6 (0.0)	762 (1.9)	857 (2.2)	21,652 (54.8)	2,020 (5.1)	6,801 (17.2)	489 (1.2)

주 : 1. 사법연감

2. 1호처분과 2호 또는 3호처분의 병합된 경우 1호처분은 제외하고, 2호 및 3호처분 인원은 1호처분이 병합된 인원을 포함(2007년 이전 통계)
3. 2008년도부터 보호처분 중 기타란은 병합처분 인원을 나타냄
4. ()안은 백분율

이는 보호관찰을 통해 소년의 인격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소년사법제도에서 다이버전의 확대가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표 9>에서 소년보호사건의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법원소년부에 송치되면 75% 이상이 제1호에서 제10호(개정전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99년의 경우는 88.7%가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8년에 76.4%가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하여 소년범죄자에 보호처분을 취하지 않는 불처분은 감소경향을 보이다 다시 증가하였고, 심리불개시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9년 불처분비율은 5.1%, 심리불개시한 비율이 5.8%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8년 불처분비율이 5.1%로 최근 10년간 변동은 있었음에도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심리불개시의 비율은 17.2%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심리불개시의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은 법원소년부가 이전의 가정 환경에 기반한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대신 심리불개시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⁹⁾ 또한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위탁 처분을 받은 소년범죄자는 예산상의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밖에 보호가 필요한 비행소년들을 위탁할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도 1999년부터 2008년까지 2% 내외에 불과하여 다른 처분에 비해 낮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단기소년원송치 처분과 장기소년원송치 처분은 1998년 이래로 실제 수용인원은 소년범죄의 발생건수가 줄면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59) 이은환, "소년사건 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제언", 『소년법연구』, 한국소년정책학회, 2007, 165면.

N. 결론

현행 소년법은 비행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품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에 중점을 두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소년의 경우 아직 성숙한 인격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정상적인 시비결정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으로 그 형사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소년범죄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사소한 비행에서 시작되어 흉악범죄로 발전하고 또한 성인범죄자로 재범을 반복하는 생활을 하기 쉬운 첫 단계가 소년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초기에 단계적·적극적인 선도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소년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년범죄자와 초기단계에 접촉하게 되는 경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검찰, 법원 등의 형사사법기관들이 적극적인 선도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비행소년들의 반복적인 형사사법절차와 낙인효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본고에서 소년범죄의 실태와 그 처리절차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근 소년범죄자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년범죄를 질적으로 살펴보면 폭력범죄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절도와 사기 같은 비폭력범죄, 즉 재산범죄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 재범의 비율은 20% 내외에 불과했으나 1998년 이후 35%로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재범현상이 급증하고 또한 상습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소년사건 처리절차 분석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우범소년과 불량행위소년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점, 즉 우범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둘째, 검사선주의와 법원선주의에 갈등 관계에 있다는 점, 셋째, 적정절차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문제점, 넷째,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관련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와 보호처분의 대상의 연령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소년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소년사법에 균형적 혹은 회복적 사법을 도입, 수사단계에서의 다이버전 확대, 보호처분의 다양화·내실화, 소년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연령과 우범소년의 연령 축소, 소년법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마련 등 이다. 특히 개정소년법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문제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으로써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소년사법에서 소년보호의 이념을 좀 더 충실하게 실천하기 위해 소년사법의

전문화·과학화를 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소년법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년사건처리과정에서 이를 개선하려 노력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소년사법체계의 실제 운영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반영하는데 미흡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법제의 보완과정에서는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년사건 처리에 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영철, “비행소년의 증가원인과 보호대책”, 「교정연구」, 제15호, 한국교정학회, 2002.
 경찰청, 「경찰백서」, 2007.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백서」, 2007.
 김성돈, “우리나라 소년법의 검사선주의모델의 개선방안”, 「저스티스」, 제88호, 2005.
 김지선, 「소년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대검찰청, 「검찰연감」, 2007.
 법무부, 「소년보호통계」, 제16호, 2007.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8.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백서」, 2009.
 성우제, “한국 소년보호행정의 개관”, 「범죄예방 이론과 실제 증보2판」, 한국범죄예방 정책연구, 2005년.
 이육, “검사선주의와 법원선의주의”, 「소년보호연구」, 제8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5.
 오영근,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통권 제7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오영근, “선도조건부기소유에 실무”, 「범죄예방의 이론과 실제 증보2판」, 한국범죄예방 정책연구, 2005.
 원혜옥, “소년법과 비행소년 사법절차”, 「범죄예방의 이론과 실제 증보2판」, 한국범죄 예방정책연구, 2005.
 윤동호, “소년범죄와 그 처리동향의 분석”, 「경성법학」, 제16집 제1호, 경성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7.
 이순례, “소년전환처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년법연구」, 창간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2.
 이순례, “소년사법의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 (통권 제7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이수형,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상의 문제점과 대안”, 『법학논고』, 제21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4.
- 이은환, “소년사건 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제언”, 『소년법연구』, 한국소년정책학회, 2007.
- 장중식, “소년범죄 처리와 소년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41호, 한국교정학회, 2008.
- 점승원, “법원에서의 보호사건처리절차”, 『법학연구』, 제7집, 한국법학회, 2001.
- 정의철, “현행 소년법의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암법학』, 제21호, 안암법학회, 2005.
- 최종식, “소년법상 보호처분제도의 개선방안”, 『소년법연구』, 제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2.
- 최종식, “소년법개정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 한숙희,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른 가정법원의 역할과 과제”,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통권 제7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Abstract]

A Study on the Realities of Juvenile Delinquencies and Juvenile Case Processing

Kim, Chang-Kuhn

Professor, Law School, Jeju National Univ.

Rim, Kye-Ryung

Dept. of Law, Jeju National Univ.

Juvenile act that is aimed at soundly cultivating juvenile has divided the court process into juvenile protection process to establish the environment and to correct its prevalence and juvenile criminal process to perform criminal charges of juvenile criminal. Although it has brought enormous results in juvenile delinquent and juvenile jurisdiction in the meanwhile, juvenile act has got into trouble in its application to juvenile case process. This is attributed to incorrect regulation of juvenile act caused by isolation between theory and hand-on juvenile case handling, insulation of causes and countermeasures, discordance between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criminal justice systems. This study has researched which role judicial institutions play in the process of juvenile cases in dealing with juvenile cases in police, prosecution, a criminal court and juvenile court and how to transact juvenile cases according to certain process. In addition, it has researched the solution to them.

Key words : Juvenile Delinquencies, Police, Prosecution, Criminal court, Juvenile Court